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8권 제3호(통권 제111호, 2017・가을)

디지털 자경주의의 논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및 전망

남궁 현*

국 | 문 | 요 | 약

디지털 자경주의는 현실세계나 가상세계의 법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의적으로 심판하고 응징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현실세계에서의 자경단이 부도덕적,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을 통해 그들의 분노와 불만을 만족시키고 지역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려고 했듯이, 디지털 자경단은 수사기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자체 경찰활동을 통해 스스로 "응징"함으로써 만족감을 획득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를 직접 검거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정 행위를 디지털 자경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형사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한 학술적 토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현실에서의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활동에서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규범 위반 활동을 해결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수사시관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 상의 치안 공동생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현실이나 인터넷 상의 법률이나 규범 위반자를 직접 수사한 후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을 통한 개인적, 집단적 응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즉 디지털 자경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형사정책적·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디지털 자경주의, 자경주의, 디지털 자경단, 자경활동, 네티즌 수사대, 사이버범죄, digital vigilantes, vigilantism, digilantism, SNS, 소셜 미디어, 인터넷 범죄

* 메트로폴리탄 덴버 주립대학 조교수

Ⅰ.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미 인터넷의 부재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인터넷으로 인한 각종 업무 처리나 의사소통 방식의 효율성 제고는 그 긍정적 효과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교환과 의견 제시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현상들이나 부작용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1)]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에서의 따돌림 현상(일명 인터넷 왕따)과 같이 "전통적"인 범죄가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고, SNS 상에 범죄 행위를 생중계[2)]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태가 등장하고 있다.[3)] 최근에는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와 같은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온라인 단체와 이들의 "신상털기"라는 새로운 행위가 등장하여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수집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은 물론, 기존의 수사기법을 보완할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이나 직관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활동도 등장하였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시민의 수사참여는 자발적 경찰활동을 통한 치안 공동생산자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치졸한 보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과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라고 불리는 개인이나 집단 등에 의한 자발적

1) 정완. (2002).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

2) The Washington Post. Cleveland police seek suspect in Facebook homicide video. (2017/4/16)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cleveland-police-seek-suspect-in-facebook-live-homicide-video/2017/04/16/83ff3f56-22ea-11e7-a1b3-faff0034e2de_story.html?tid=ptv_rellink&utm_term=.4ff2f7c35588

3) 남궁현·심희섭. (2017). 과학기술이 경찰활동에 미친 변화와 그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31(1), 1-42.

수사와 처벌(혹은 응보나 응징) 등 인터넷 상의 새로운 현상을 “디지털 자경주의(digital vigilantism)”라는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의미와 영향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나 현실세계에서의 범법자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경찰활동을 디지털 자경주의 측면에서 연구한 서구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법체계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자경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등 형사정책기관의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디지털 자경단과 온라인 치안 공동생산자

2013년 영국의 라이체스터셔(Leicestershire)에 거주하던 게리 클리어리라는 29세의 청년은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해 소아성애자(paedophile)임이 발각되고 자신의 실체가 공개되자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레츠고헌팅(Letzgo Hunting)은 온라인상에서 어린이를 해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선한 의도를 보유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구성원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어린 소녀로 가장하여 게리 클리어리를 꾀어냄으로써 그의 행각을 적발하고 이를 공개했던 것이다.[4] 이 단체는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계획했던 많은 범법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변태적 정의(Perverted Justice)[5]라는 자극적 이름의 사설 단체가 함정수사 방식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매매를 하려는 자들의 신분을 파악해 낸 후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 특히 이 온라인 단체는 그들만의 전문지식과 시

4) BBC. Letzgo Hunting denies blame for man’s suicide. (2013. 9. 18.) http://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24145142

5) http://www.perverted-justice.com/

6) Winters, C. P. (2008). Cultivating a relationship that works: Cyber-vigilantism and the public versus private inquiry of cyber-predator stings. *University of Kansas Law Review*, 57, pp. 427-460.

간, 경험 등을 투자하여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경찰기관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을 정도다.

위와 같은 사례는 비단 일부 영미국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인육검색엔진(human flesh search)[7]라는 사이트를 통해 부도덕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파악, 수집, 공유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자경활동으로 인해 일부 부패한 관료나 공무원들의 행태가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역할론을 피력하는 견해도 있다.[8]

최근 이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설 경찰활동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단순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일명 "악플러"나 인터넷을 통해 의도적으로 타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던 이른바 자경주의(vigilantism)에 대한 이해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활동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였다. 특히 자경주의에 비교적 생소한 우리 형사정책이나 범죄학 분야에서는 이 같은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1. 자경주의의 정의 및 구성요소

자경주의는 공식적인 형사정책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그 같은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조직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를 칭하는 개념이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형사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들의 역할이 만족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을 경우에 자발적 개인들이나 단체가 범죄의 예방과 범인의 검거, 처벌 등 형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대신하여 직접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7) 이들은 기존의 전산망에서 복잡하고 정밀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사람의 움직임과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육검색"이라는 섬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heong & Gong, 2010).

8) BBC. China's internet vigilantes and the 'human flesh search engine' (2014. 1. 28.) http://www.bbc.com/news/magazine-25913472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했던 지역, 특히 19세기의 서부 개척시대에 많은 지역에서 자경단이 조직되어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까지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적인 자경단(vigilante groups)은 대개 지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킨다는 선의에서 출발한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자경단의 경우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강자의 이익만을 좇았다는 평가도 많다.[9] 미국 범죄학자들 중에는 이 자경단의 활동을 "필요악"이라고 정리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형사기관이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산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남부에 위치한 지역 등 일부 주에서는 공식적인 형사사법제도가 갖춰졌던 20세기 초까지 인종차별적인 자경단이 활동하면서 특정 인종에 대한 린칭(lynching)을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고, 인종 간의 불신을 키우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경단의 활동은 일부 국가의 역사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도 국가기관이 아닌 자발적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이 믿는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처벌하려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자경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의 일부 국가에서 저질러졌던 자발적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만을 자경주의라고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임의로 설정한 규율이나 믿음에 따라 타인의 불법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에 폭력이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려는 임의적인 처벌 행위 전반을 자경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Johnston(1996)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자경단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는데,[10] 그의 시도를 디지털 자경단을 이해하는데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Johnston(1996)은 자경주의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정도의 조직과 사전 계획을 필요로 한다. 예

9) Berg, M. (2011).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Lynching in America*. Chicago, IL: Ivan R. Dee.; Walker, S. (1980).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0) Johnston, L. (1996). What is vigilantism?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2), 220-236.

를 들어, 일정 장소나 범죄자에 대해 관찰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방위나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범죄자에 대해 보복했을 경우는 자경활동이라고 칭하기 어렵다. 둘째, 행위자가 국가기관의 권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일원이 수사 활동 중 행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자경활동이 아니다. 셋째, 행위의 목적이 특정 지역의 법이나 규율, 혹은 규범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지역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설 경비업체 등의 활동은 자경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넷째,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범죄나 다른 사회규범의 위반이나 잠재적 위반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경주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경주의의 요소 이외에도 대개의 경우 자경단은 국가기관(특히 수사기관)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경우가 많다. 특히 자경주의의 형성 배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 마을이나 지역 등 그 행위가 미치는 공간적 규모가 크기 않았던 것도 전통적인 자경주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디지털 자경주의의 정의 및 특징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경주의(digital vigilantism)[11]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학자 혹은 실무가들 사이에서 일관적인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몇몇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 자경주의란 "자발적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상규에 비춰 심히 부적절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보복을 꾀하거나 실제 현실에서의 보복을 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12] 특정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 개인이나

11) 혹은 digilantism, cyber vigilantism, internet vigilantism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Nhan, J., Huey, L., & Broll, R. (2017). Digilantism: An analysis of crowdsourcing and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 pp. 341-361.; Trottier, D. (2017). Digital vigilantism as weaponisation of visibility, *Philosophy & Technology*, pp.1-18.)

12) Nhan, J., Huey, L., & Broll, R. (2017). Digilantism: An analysis of crowdsourcing and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 pp. 341-361.; Trottier, D. (2017).

단체가 그 행위에 대한 사적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어긴 자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신분이나 배경을 노출함으로써 응징하려는 행위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이 새로운 현상을 사용자 주도 수사 활동(user-led investigation), 사이버 형사(cyber detectives) 혹은 크라우드소싱 경찰활동(crowdsourced policing)[13]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의 "네티즌 수사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터넷 형사(websleuths)라고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들 개념 모두가 반드시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디지털 자경주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개인이나 단체를 디지털 자경단(digital vigilante)이라고 부르고 있다.

디지털 자경단에는 특정한 사회적·정치적 이념이나 주장(예컨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지지하는 이익단체 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기관이나 집단의 전산 시스템을 공격하거나,[14] 테러 단체의 전산망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15] 등 이른바 핵티비즘(hactivism)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공식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보복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표 1〉 전통적 자경주의와 디지털 자경주의의 비교

	전통적 자경주의	디지털 자경주의
참여자	국가기관의 권위가 없는 자발적 시민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
사전계획	행위자의 사전 실행 계획이나 행위자간 모의	계획적 혹은 충동적
동기	특정 지역의 규율을 지키려는 시민의식; 기존의 사회 규범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기에 있다고 판단	기존의 사회 규범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기에 있다고 판단
수단	폭력이나 협박 행사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분석, 유포를 통한 수치심 유도나 명예 실추; 특정 분야나 지역에 대한 다수의 전문성을 조합

Digital vigilantism as weaponisation of visibility, *Philosophy & Technology*, pp. 1-18.

13) Trottier, D. (2014). Police and user-led investigations on social media, *Journal of Law, Information & Science*, 23(1), pp 75-91.

14) Mother Jones, Anonymous Hacked the Data of More Than 1,000 Climate Change Officials (2015. 12. 4.) http://www.motherjones.com/environment/2015/12/anonymous-just-hacked-data-more-1000-climate-change-officials/

15) The Guardian, Anonymous 'at war' with Isis, hacktivist group confirms (2015. 11. 17.)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nov/17/anonymous-war-isis-hacktivist-group-confirms

	전통적 자경주의	디지털 자경주의
목적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 확보(혹은 보장)	위반 행위 통제를 통한 보복; 사후 유사행위 예방이나 집단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
공간	특정 지역에 한정	공간 제약 없음
국가기관과의 관계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기능하며, 양자의 관계는 대체로 적대적	국가기관과 협조 가능

디지털 자경주의는 현실세계나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 불법행위나 규범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거나 불법 행위자의 배경을 직접 파헤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가상공간에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와 형사정책기관의 실무자는 물론 학자들 간에도 정형화되거나 공통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자경주의의 역할이나 범위, 영향 등에 대한 평가나 형사정책에의 함의를 전통적인 자경주의의 정의나 특색을 바탕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최근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Johnston(1996)의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경주의의 개념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의미의 자경주의와 디지털 자경주의는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전통적 자경주의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경주의는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계획적일 수도 있고 충동적일 수도 있다. 또한 실제 현실에서의 폭력이나 폭력 행사의 협박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대개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명예를 실추를 유도하고자 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의 폭력이나 협박과는 다른 형태의 행위를 수반한다. 특히 디지털 자경주의의 많은 경우에는 보복 자체가 목적이고, 사후 비슷한 행위를 막는다거나 인터넷 상의 집단적 규범을 보호하려는 예방목적은 희박한 경우도 적지 않다.

3. 디지털 자경주의의 등장 배경

디지털 자경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전화기나 다른 이동식 기기를 이용해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환경의 발전에 따라 촬영된 영상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공유하거나 개인용 자료로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90%에 가까운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2%로 거의 전 세대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도 14시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또한 만 6세 이상 국민의 8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에 투자하는 시간도 최근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횟수는 23회가 넘고, 청소년의 30.6%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적 상태인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날 정도이다.[17]

그리고 SNS가 대중화 되면서 시민들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18] 강력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활용과 SNS 검색 등을 통해 특정인의 배경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유통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다른 서구국가와 달리 다소 낮았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공권력과 언론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불법이나 불의를 시민들 스스로 다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9] 살피건대, 이들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경주의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촘촘한 인터넷 망의 확충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6) 미래창조과학부. (2016).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17) 미래창조과학부. (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18) 장규원·윤현석. (2011).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3), pp. 105-137.

19) 서이종·손준우. (201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신상털기'현상의 사회학적 고찰. 국가인권회 연구보고서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4. 디지털 자경주의와 다른 온라인 활동의 구분

위 <표 1>에 따르면 흔히 거론되는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 중 일부가 디지털 자경주의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네티즌 수사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 범주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행위에서부터 수사기관을 원조하는 수사 보조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행위의 폭과 유형이 다양하다. 예컨대, 자발적 개인들이 인터넷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명인(혹은 그 가족과 친인척)의 사진은 물론 직장, 거주지 등을 공개함으로써 그 당사자의 명예나 사회적 신용을 해하고자 하는 이른바 "신상털기"까지도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으로 묶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지털 자경주의는 이미 형성된 법률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직접 수사하여 응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 행위와는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이른바 "개똥녀"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인터넷에서 배포한 경우,[20] 이 행위자의 신분이 공사기관 등에 의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활동으로 개인정보가 파악되어 공개, 유포되었기 때문에 이는 디지털 자경주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경주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자경주의와 비슷한 현상으로는, 첫째 온라인 치안 공동생산이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범죄 예방이나 감시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행위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는 2007년 5월부터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는데,[21] 자발적 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의 구성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감시하고 발견시 수사기관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자이지만 그 역할과 임무는 경찰이 정한 분야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 Solove, D. J. (2007).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1) http://www.nuricops.org

둘째로는 개인과 집단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 활동이 있는데, 미국 보스턴 테러 사건 이후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당시의 폭발 테러로 인해 대회에 참석했던 관중 3명이 사망하고 170명 이상이 크게 다쳤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 주, 지역 경찰은 현장의 수많은 감시카메라 영상과 폭발물 감식, 혈흔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와는 별도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독특한 시각 등을 바탕으로 공유된 영상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레딧(Reddit)[22]이라는 SNS를 이용해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른 이용자가 올린 의견에 대한 지지나 반박을 통해 용의자를 파악하는 시도를 했다. 이후 경찰에서도 폭발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사기관에의 협조를 유도했는데,[23] 이들의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정보와 지식의 공유 등은 근래 의논되고 있는 "집단지성(collective knowledge)" 혹은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캐나다 밴쿠버 폭동 사건[24]의 경우에도 폭동에 공포감과 혐오감을 느낀 자발적 시민들이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 매체를 통해 사진 등 영상 자료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경찰도 폭동 주도자와 가담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경찰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 이들 자료를 통해 폭동 가담자를 검거해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자발적 경찰활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경우,[25]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터넷 이용자의 결정적 단서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의 정

22) http://www.reddit.com

23) Reddit. 2013 Boston Marathon Attacks. https://www.reddit.com/r/boston/comments/1cf5wp/2013_boston_marathon_attacks_please_upload_any/

24) 2011년 6월 15일, 보스턴 브루인스(Boston Bruins)와 밴쿠버 캐넉스(Vancouver Canucks) 간의 하키 결승전 경기에서, 밴쿠버 캐넉스가 패하자 이에 분노한 관중들에 의해 시작된 폭동으로 140여 명이 다치고, 10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다.

25) 헤럴드경제. '크림빵 뺑소니'사건, 뺑소니 범죄수사 판도 바꿨다. (2016. 1. 1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8000054

황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와 사회적 관심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자발적 수사활동은 활동 가담자들이 직접적인 처벌(혹은 보복)이나 협박 등에 나서지 않는 점에서 디지털 자경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범행이나 규범 위반자의 개인정보(예컨대 이름의 성이나 직장 등) 중 일부 혹은 전부가 공개되었을 경우, 이들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응징"을 꾀하려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언론에서 흔히 "신상털기"라고 불리는 행위가 대부분 이에 속할 수 있고, 이미 개인 정보의 일부가 공개된 상태에서 당사자에 대한 분풀이와 분노 욕구 표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디지털 자경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비행기에서 라면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사기업 임원(속칭 "라면상무" 사건[26])이나 사소한 이유로 비행기의 이륙을 지연시킨 항공사 대표(이른바 "땅콩회항" 사건[27])의 신상정보를 찾아 공개한 경우 등은 이미 행위자의 인적 사항이 공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디지털 자경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포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개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단순한 응징 욕구에 기댄 행위들이 많다. 또한, 규범 위반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도 종종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적, 형사정책적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28]

넷째로, 악의적 명예훼손을 들 수 있다. 이는 법률이나 온라인상의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의 감정이나 선호에 근거하여 악의적으로

26) 서울신문. '라면상무' 11시간의 진상, 그만의 진상이었나. (2013. 5. 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04016008#csidxdd32f6ca18ee65881b1fc6220b3c03c

27) 정상헌·조성구·김동제. (2015). 항공보안요원의 법제적 지위와 교육훈련, Crisisonomy. 11(4), pp. 141-156.

28) 윤해성·박성훈,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4; 이상현. (2014).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 25(3), pp. 127-159.; 최경환. (2013).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규제법리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7월호, pp. 47-6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 기사 등에 주관적이거나 근거 없는 악성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9] 물론 이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실정법이나 인터넷 상의 규범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무차별적인 보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경주의와는 구별된다.

이상의 유사 개념들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요약하면, 디지털 자경주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규범 위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공개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처벌"을 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행위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 디지털 자경주의와 유사 개념[30]

구 분	특 징	예 시
1. 치안 공동생산 활동 (Civilian policing)	수사기관이 사건수사를 주도하고 시민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협조하는 하향식 온라인 수사 활동	경찰청 운영 "누리캅스"
2. 자발적 수사활동 (Crowdsourcing)	수사기관의 수사와 동시에(혹은 수사 개시 이전에라도) 자발적 개인이나 단체가 용의자 검거를 위한 별도 증거 수집 및 분석 활동; 신뢰할 말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인도하거나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공개하는 등 상향식 수사 활동; 집단지식 혹은 크라우드소싱 경찰활동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 후 시민 활동; "크림빵" 뺑소니 사건
3. 디지털 자경주의 활동 (Digilantism)	실정법이나 인터넷 상의 규범을 위반한 자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 개인 정보 공개로 모욕감/수치심 유발을 통한 응징;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철학에 반하는 공사기관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중요 문서 자료 등 정보 공개 인터넷 이용자 주도의 직접 수사 활동	"개똥녀" 사건; 핵티비즘(hactivism)
4. 정보공개를 통한 응징 (Online revenge)	이미 개인 신상의 전부 혹은 일부가 밝혀진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유포; 검거된 범인 혹은 용의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포를 통한 응징	"라면상무" 사건; "땅콩회항" 사건
5. 악의적 명예훼손 (Defamation)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연예인 타블로 사건

29)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연속세미나 III 제37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2008). '악플러, 가면 벗기기'

30) 이들 행위는 참여자와 수사기관과의 능동적 협조에 따라 순서를 매긴 것이다.

Ⅲ. 디지털 자경주의와 관련한 논점

이 장에서는 디지털 자경주의와 관련한 여러 논점을 살펴봄으로써 이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위 <표 2>의 디지털 자경주의 활동에 국한하여 이와 관련된 논점을 고찰함으로써 왜 디지털 자경주의가 사회적인 토론은 물론 형사정책적인 고려를 요구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자경단의 정당성 및 효과성

인터넷 상에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돕고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현실에서 시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원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 등 충분하지 못한 자원 현실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 특정 사건에 대한 열의가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활동은 경찰의 수사 활동이나 전문성을 능가할 수도 있다.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범죄 집단이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 일부 외국의 사례를 살핀다면 선의로 행동하는 디지털 자경단은 특정 범죄자나 범죄 집단에 대해 강력한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경찰이 예방하거나 감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발적으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통제하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특정 범죄에 대해 일부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자경주의 활동이 공무원 부패에 대한 다소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인정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파괴하고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자경활동을 묵과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의 범죄이건 인터넷 상에서의 법률 위반 행위이건 모든 범죄는 국가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31]

31) Chang, L. Y., Zhong, L. Y., & Grabosky, P. N. (2016). Citizen co-production of cyber security:

또한 모든 범죄 사건이나 테러 사건에 이 같은 디지털 자경단의 행위가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디지털 자경단의 활동이 범죄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검거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32]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공유하였으나 실제 범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다.[33] 오히려 디지털 자경단의 활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범죄의 용의자로 오인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잘못된 판단(혹은 추측)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디지털 자경단의 활동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위에서 제시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도,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드러난 뺑소니 차량의 차종과 번호판 등을 인터넷 사용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무고한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즉, 디지털 자경단의 집단지성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인터넷 상에서 시민의 원조는 단순한 수사기관에의 정보 제공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34] 또한 범죄나 대중의 이목을 이끄는 사건의 경우 각종 제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이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디지털 자경단이 근거 없는 제보나 정보(혹은 단순한 의견제시나 추측)를 무책임하게 전달할 경우 소수의 경찰인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35]

Self-help, vigilantes, and cybercrime. *Regulation & Governance*.

32) Kosseff, J. (2016). The hazards of cyber-vigilantism.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2(4), pp. 642-649.

33) Nhan, J., Huey, L., & Broll, R. (2017). Digilantism: An analysis of crowdsourcing and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 pp. 341-361.

34) Huey, L., Nhan, J., & Broll, R. (2013). Uppity civilians' and 'cyber-vigilantes': The role of the general public in policing cyber-crime.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3(1), pp. 81-97.

35) Nhan, J., Huey, L., & Broll, R. (2017). Digilantism: An analysis of crowdsourcing and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 pp. 341-361.

2. 개인적 수사 활동으로 인한 위험의 초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 위반 행위나 사회 상규에 크게 반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그 같은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기대하는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제재나 처벌이 늦어지거나,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인지할 경우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어 왔다. 특히 명예나 평판 등에 대해 큰 가치를 두는 우리 문화를 이용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직접 응징하려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6)]

디지털 자경활동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처단한다는 공익적인 의도로 출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실제로는 이들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부족한 수사력이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수사를 권장하기 시작한다면 선의의 참여자가 일순간에 디지털 자경단의 일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자경단의 의도를 선의로만 간주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디지털 자경활동을 방관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묵과한다면 자발적 개인이나 단체의 적극적 “수사활동”은 그 행위자의 안전은 물론 네트워크 등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자경활동으로 인해 개인 신상의 공개나 명예 실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역으로 가해자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자경단의 신상을 파헤치는 “역 디지털 자경활동” 또한 가능하다.[37)] 예컨대, 부도덕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의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경우, 이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유포한 자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파악해서 그들의 민감한 정보를 역으로 인터넷에 퍼뜨리는 일 또한 가능한 것이다. 이 역시 현실세계에서의 자경활동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보복하려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 자경활동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36) Solove, D. J. (2007).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37)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010. 3. 3. China’s Cyberposse)

3. 디지털 자경주의와 다른 행위와의 모호한 경계

디지털 자경단 중에는 특정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선의의 개인과 단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디지털 자경단과 단순히 "신상터는" 개인/단체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인터넷 단체에서 선의를 갖고 뺑소니 차량 용의자의 신분을 파악해서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그가 검거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여기에서 활동이 종료되면 대중의 자발적이고 선한 치안 공동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후 같은 행위자에 의해 그 용의자의 사진이나 각종 개인적인 정보(가족, 직장 등)가 연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배포될 가능성이 많다. 즉,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자료 등이 보복이나 응징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의 가족들은 그의 범죄를 훨씬 초월하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선의로 시작된 자경단은 바로 "신상털기"의 주범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4. "디지털 린칭"의 폐해

자경주의를 크게 문제 삼았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이나 사회의 규범을 어겼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한 처벌을 가한, 소위 린칭 때문이었다. 즉,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자의적 응보를 가했는데, 이 때문에 행위와 처벌의 균형성(proportionality)이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 물론 린칭에 다소 수용적인 견해에 따르면 린칭은 지역의 가치나 전통, 그리고 이해에 적합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높은 단계의 규율(higher law)"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38] 이 견해에 따른다면 이른바 인터넷 공간만의 규율과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그 이용자들의 방법으로 처단하는 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38) Berg, M. (2011).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Lynching in America*. Chicago, IL: Ivan R. Dee.; Walker, S. (1980).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불법적·비도덕적 행위를 인터넷 상에서의 자발적 개인/집단이 자의적으로 응징하는 것을 묵과한다면 디지털 자경단에 의한 "디지털 린칭"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아무리 비난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와 처벌은 국가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위-처벌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 같은 원칙이 현실세계에서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확고히 지켜져야 함을 천명해야 한다.[39]

Ⅳ. 형사정책에의 과제와 전망

1.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개념 확립

앞서 밝힌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인터넷 상에서의 자발적 개인들과 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이나 연예인, 혹은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유포, 혹은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40] 근래의 학술적 논의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입법적·형사정책적 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41] 즉,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는 행위 중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42] 하지만 특정 범죄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의 지식이나 경험, 직관 등을 종합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범죄에 필수적인 증거와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

39) Kosseff, J. (2016). The hazards of cyber-vigilantism.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2(4), pp. 642-649.

40) 성기연. (2010). '타블로 학력논란' 좌충우돌 충돌기, 관훈저널 겨울호, pp. 34-40.

41) 이상현. (2014).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 25(3), pp. 127-159.; 최경환. (2013).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규제법리 연구, 7월호, pp. 47-68.

42) 예컨대, 장규원·윤현석. (2011).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3), pp. 105-137.

한 학술적인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에 대한 위치나 영상 등의 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그 위치와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대중의 관심과 의견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디지털 자경활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반적인 디지털 자경주의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개인 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함으로서 그 행위를 비난하고 행위자를 응징한다는 선의로 출발하였거나, 그런 선의로 포장된 경우가 적지 않다. 달리 말하면, 인터넷 상이나 현실세계에서의 사회 규범을 어긴 자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 행위는 그 같은 개인정보 유포를 통한 고통을 가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정당화 하려는 경우가 많다.[43)]

따라서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상에서의 다른 유사한 행위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은 물론 수사시관 종사자들이 디지털 자경활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시민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도 시민의 활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검토하고, 범인 검거에 반드시 필요할 정보만 적절히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수사기관의 교육훈련투자 및 대중 홍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발적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들의 정보와 독특한 시각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불법 행위 등을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디지털 자경단의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여 디지털 자경단을 치안 공동생산이나 크라우

43) Piza, E. L. 외 (2016).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merging proactive CCTV monitoring and directed police patrol: A cost-benefit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2, pp. 403-429.

드소싱 경찰활동(crowdsourced policing)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와 규정을 도입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담당 부서나 사이버 수사 관련자들의 훈련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44] 인터넷 자경단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핀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사건이나 캐나다의 폭동과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원조를 유도할 지에 대한 검토와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테러나 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눈과 귀"가 되는 불특정 다수의 지원 욕구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캅스" 모형도 한 예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현상에 대한 연구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자생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기 단계로서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현실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슈 혹은 이슈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서로 공유하려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정확한 개념 정의는 물론 서로 다른 행태와의 구분에 대한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5] 예를 들어,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논리적인 의견 및 지식 교환 행위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개인 정보 유통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두 "신상털기"나 "네티즌 수사대"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46] 이 같은 디지털 자경행위에 참여하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기초 연구

44) Nhan, J., Huey, L., & Broll, R. (2017). Digilantism: An analysis of crowdsourcing and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 pp. 341-361.

45) Linders, D. (2011). We-Government: an anatomy of citizen coproduction in the information age. In *Proceedings of the 12th Annual International Digital Government Research Conference: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in Challenging Times*, pp. 167-176.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서, 얼마나 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디지털 자경활동을 했거나 디지털 자경주의의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나 연구도 찾기 어렵다. 디지털 자경주의의 특성상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디지털 자경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동적으로 방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경활동을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차별적 참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또한 디지털 자경활동만을 위한 특정 목적으로 가상공간에서 조직된 단체들이 있으나, 그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예컨대, 참여동기나 빈도, 활동사항 등)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지식 등을 투자해서 공공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왜 그 같은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7] 또한 온라인상에 자발적 단체를 생성하여 이용자의 동참을 유도하거나 중개하는 "매개자"들(예컨대 온라인상의 특정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어떤 이유로 적극적인 디지털 자경주의 활동에 참여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48]

4. 수사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조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은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세계에서처럼 상식이나 최소한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9]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을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관자의 역할보다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와 협동으로 자정 노력을 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많은 SNS(예컨대 페이스북, 트위터)와 포

46) 예컨대, 이정훈. (2014). 소위 "신상털기"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 중앙법학, 16(2), pp. 97-127.

47) Linders, D. (2012). From e-government to we-government: Defining a typology for citizen coproduction in the age of social media.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9, pp. 446–454.

48) Huey, L., Nhan, J., & Broll, R. (2013). Uppity civilians' and 'cyber-vigilantes': The role of the general public in policing cyber-crime.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3(1), pp. 81-97.

49) Wall, D. S., & Williams, M. (2007). Policing diversity in the digital age: Maintain order in virtual communities.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7, pp. 391-415.

털 사이트(예컨대 네이버나 다음), 혹은 특정 사건 관련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경로(예컨대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보배드림")의 관리자들과 주기적인 대화와 정보 교환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에 포털 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캠페인이나 명예훼손이 되는 게시물 삭제 서비스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50] 무엇보다 사이트 관리자들을 통해 디지털 자경활동을 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과 같은 근대적인 형태의 경찰기관이 등장하기 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찰 기능이 유지되었었다. 영국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야경꾼(nightwatch)이나 체포 포고(hue and cry)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경찰활동을 권장하거나 강제했었다.[51] 근대 경찰제도가 자리를 잡고,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찰기관이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주된 경찰기능을 독점하는 오늘 날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장려하는 것이 많은 나라 경찰의 정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경찰활동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국가기능을 대체하려고 한 경우도 생겼는데, 바로 자경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자경주의는 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부 국가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자의적이고 잔혹한 수사와 처벌은 자경주의의 큰 오점으로 남아,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의 산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세계의 자경단이 스스로 규정한 지역의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심판하였듯이, 최근 등장한 디지털 자경주의는 현실세계나 가상세계의

50) 이진규. (2011). 신상털기 현상에 대한 이해. 국가인권회 연구보고서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51) Manning, P K. (2001). Technology's Ways: Information Technology, Crime Analysis and the Rationalizing of Policing,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1), pp. 83-103.

법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심판·응징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 자경주의는 온라인상에서의 행위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벌어진 행위까지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한다. 현실세계에서의 자경단이 부도덕적,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수사와 처벌을 통해 그들의 분노와 불만을 만족시키고 지역의 규정과 규율을 유지하려고 했듯이, 디지털 자경단은 수사기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체 경찰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방법으로 응징함으로써 만족감을 획득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검거를 도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온라인에서 계속 전개되고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경찰기관이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특성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사건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정 행위를 디지털 자경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행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형사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학문적·실증적 토론 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기관 등 다른 형사정책기관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진행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관망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자(혹은 주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실무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자의적 행동이 디지털 자경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특정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여 원조를 요청할 경우에도 그들의 활동이 디지털 자경주의로 탈선되지 않고 치안 공동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형 포털 운영업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업체 등과 협조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단순한 수사 원조를 넘어 인터넷(혹은 현실세계)에서 타인을 직접 응

징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처단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현실에서의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활동에서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규범 위반 활동을 해결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면 온라인상의 치안공동생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현실이나 온라인상의 법률이나 규범 위반자를 직접 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을 통해 자의적으로 응징하거나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남궁현·심희섭. (2017). 과학기술이 경찰활동에 미친 변화와 그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31(1), 1-42.

미래창조과학부. (2016).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_____. (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서이종·손준우. (201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신상털기'현상의 사회학적 고찰. 국가인권회 연구보고서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성기연. (2010). '타블로 학력논란' 좌충우돌 충돌기, 관훈저널 겨울호, pp. 34-40.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연속세미나 III 제37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2008). '악플러, 가면 벗기기'

윤해성·박성훈,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4.

이상현. (2014).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 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 25(3), pp. 127-159.

이정훈. (2014). 소위 "신상털기" 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 중앙법학, 16(2), pp. 97-127.

이진규. (2011). 신상털기 현상에 대한 이해. 국가인권회 연구보고서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장규원·윤현석. (2011).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3), pp. 105-137.

정상헌·조성구·김동제. (2015). 항공보안요원의 법제적 지위와 교육훈련, Crisisonomy. 11(4), pp. 141-156.

정완. (2002).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최경환. (2013).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규제법리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7월호, pp. 47-68.

서울신문, '라면상무' 11시간의 진상, 그만의 진상이었나, 2013. 5. 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04016008#csidxdd32f6ca18ee65881b1fc6220b3c03c (2017. 8. 15. 검색)

헤럴드경제, '크림빵 뺑소니'사건. 뺑소니 범죄수사 판도 바꿨다, 2016. 1. 1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8000054 (2017. 8. 15. 검색)

[외국문헌]

Berg, M. (2011).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Lynching in America*. Chicago, IL: Ivan R. Dee.

Chang, L. Y., Zhong, L. Y., & Grabosky, P. N. (2016). Citizen co-production of cyber security: Self help, vigilantes, and cybercrime. *Regulation & Governance*.

Chang, L. Y., & Poon, R. (2016). Internet vigilantism: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cyber crowdsourcing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March.

Cheong, P. H., & Gong, J. (2010). Cyber vigilantism, transmedia collective intelligence, and civic participation.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3(4), pp. 471-487.

Huey, L., Nhan, J., & Broll, R. (2013). 'Uppity civilians' and 'cyber-vigilantes': The role of the general public in policing cyber-crime.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3(1), pp. 81-97.

Johnston, L. (1996). What is vigilantism?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2), pp. 220-236.

Kosseff, J. (2016). The hazards of cyber-vigilantism.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2(4), pp. 642-649.

Linders, D. (2012). From e-government to we-government: Defining a typology for citizen coproduction in the age of social media.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9, pp. 446–454.

Linders, D. (2011). We-Government: an anatomy of citizen coproduction in the information age. In *Proceedings of the 12th Annual International Digital Government Research Conference: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in Challenging Times*, pp. 167-176.

Manning, P K. (2001). Technology's Ways: Information Technology, Crime Analysis and the Rationalizing of Policing,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1), pp. 83-103.

Nhan, J., Huey, L., & Broll, R. (2017). Digilantism: An analysis of crowdsourcing and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 pp. 341-361.

Piza, E. L., Gilchrist, A. M., Caplan, J. M., Kennedy, L. W., & O'Hara, B. A. (2016).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merging proactive CCTV monitoring and directed police patrol: a cost–benefit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2(3), pp. 403-429.

Smallridge, J., Wagner, P., & Crowl, J. N. (2016). Understanding cyber-vigilantism: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Theoretical & Philosophical Criminology*, 8(1), pp. 57-70.

Solove, D. J. (2007).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Trottier, D. (2017). Digital vigilantism as weaponisation of visibility. *Philosophy & Technology*, 30(1), pp. 55-72.

Walker, S. (1980). *Popular Justice: A History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ll, D. S., & Williams, M. (2007). Policing diversity in the digital age: Maintain order in virtual communities.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7, pp. 391-415.

Winters, C. P. (2008). Cultivating a relationship that works: Cyber-vigilantism and the public versus private inquiry of cyber-predator stings. *University of Kansas Law Review*, 57, pp. 427-460.

BBC. China's internet vigilantes and the 'human flesh search engine'. 2014. 1. 28.

http://www.bbc.com/news/magazine-25913472 (2017. 8. 15. 검색)

BBC, Letzgo Hunting denies blame for man's suicide. 2013. 9. 18.

http://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24145142 (2017. 8. 15. 검색)

The Guardian, Anonymous 'at war' with Isis, hacktivist group confirms. 2015. 11. 17.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nov/17/anonymous-war-isis-hacktivist-group-confirms (2017. 8. 15. 검색)

Mother Jones, Anonymous hacked the data of more than 1,000 climate change officials. 2015. 12. 4.

http://www.motherjones.com/environment/2015/12/anonymous-just-hacked-data-more-1000-climate-change-officials/ (2017. 8. 15. 검색)

The New York Times Magazine, China's cyberposse. 2010. 3. 3.

http://www.nytimes.com/2010/03/07/magazine/07Human-t.html?pagewanted=all (2017. 8. 15. 검색)

Perverted Justice

http://www.perverted-justice.com/index.php?pg=policeinfo

The Washington Post. Cleveland police seek suspect in Facebook homicide video. 2017. 4. 16.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cleveland-police-seek-suspect-in-facebook-live-homicide-video/2017/04/16/83ff3f56-22ea-11e7-a1b3-faff0034e2de_story.html?tid=ptv_rellink&utm_term=.4ff2f7c35588 (2017. 8. 15. 검색)

Digital Vigilantism and Its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Namgung, Hyon*

Modern societies have encouraged civilians to actively involve in policing. In fact, the origin of modern policing system stemmed from the voluntary support of community members. This form of police-citizen cooperation is still important in the digital age to prevent online crimes and detect cyber criminals. However, we have increasingly witnessed many high profile cases of personal attacks and revelations of sensitive information of some celebrities and innocent citizens in the new arena: Interne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is new phenomenon on the web through the perspective of digital vigilantism. More specifically, it looks into citizens' responses to rule and/or norms violations both in real life and cyber space using the analysis of traditional vigilantism done by Johnston(1996).

Although digital vigilante groups can help police solve some crimes and/or identify criminals, they are also vulnerable to arbitrary and ruthless personal attacks and defamation through collecting and sprea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harming reputation. Thus,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needs to guide potential digital vigilante groups to co-producers of civilian policing. Also,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train their officers so that they can educate people (i.e., Internet users) about the danger of digital vigilantism. Even when police need critical tips and intelligence from the public to solve crimes, police have to be mindful of potential vigilante activities through citizens' attempts. Lastly, police, online service

* Assistant Professor, 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 USA

providers, and online community organizers should work together to prevent digital vigilantism on the web.

❖ Keyword: digital vigilantes, vigilantism, digilantism, SNS, social media, cyber crime, Internet crime, crowdsourced policing, civilian policing

투고일 : 8월 16일 / 심사일 : 9월 15일 / 게재확정일 : 9월 15일